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1.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12. 17
- 다. 상 정 일 자 : 96. 12. 23 (제50회 정기회 제14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 안 자 : 내무과장 이 병 일
- 나. 제안사유
 - 화순온천 개발사업소 설치 존속시한이 96. 12. 31에서 98. 12.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다. 주요내용

- 제명 및 제1조 용어 변경

- ┌ 현행 :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 └ 개정 :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 사업소의 위치 (안 제2조 제1항)

- ┌ 현행 :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

- └ 개정 : 사업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재휴)

- 화순온천 개발사업소 설치 존속시한이 96년 12월 31일에서 98. 12. 31까지 연장승인 되고, 한시정원 2명이 감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12.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부칙 제3항 (존속시한)이 '96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어
- '96. 10. 1자로 존속시한 연장 (10년) 승인 신청한 결과
- '96. 12. 11자로 존속시한 '98. 12. 31 (2년) 연장 승인 되었으며
- 한시정원인 도곡분소장 토목. 건축 6급 1명 및 행정 8급 1명이 감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근거

- 자치 12200-2162 ('96. 12. 11) '96년말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 (자료 별첨)

3. 주요골자

제명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를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로 하고

제2조 (사업소 및 분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소) ①사업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

②사업소는 북면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

제5조 (분소장)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한다.

"부칙" 존속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화순군화순온천개발소"를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사업소) ①사업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

②사업소는 북면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존속시한)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명 : <u>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u></p> <p>제1조 (설치) 화순군 온천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온천지구내의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u>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 (사업소 및 분소) ①사업소는 <u>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u></p> <p>②사업소는 <u>북면온천지구, 도곡분소는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u></p> <p>제5조 (분소장) ①분소에 <u>분소장을 두며, 지방토목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u></p>	<p>제명 : <u>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u></p> <p>제1조 (설치) <u>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u></p> <p>제2조 (사업소) ①사업소는 <u>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u></p> <p>②사업소는 <u>북면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를 관할한다.</u></p> <p>제5조 (<u>삭제</u>)</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②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제6조 (공무원) (생략)</p> <p>제7조 (사용료의 징수) (생략)</p> <p>제8조 (규칙) (생략)</p> <p>부 칙</p>	<p>제5조 (공무원) (현행과 같음)</p> <p>제6조 (사용료의 징수) (현행과 같음)</p> <p>제7조 (규칙) (현행과 같음)</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폐지조례) 화순군도곡은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p> <p>③(존속시한) 화순군화순은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②(존속시한) 화순군은천개발사업소 존속 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다.</p>